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검 토 보 고

■ 최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527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 검토	7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7
2. 입법 배경 및 검토 의견	10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8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20
1. 정의	20
2.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시행	22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6
4.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28
5. 미래 설계 지원	35
6. 보칙	38
7. 부칙	40

I. 개요

1.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52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혁진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12. 23.
- (3) 회 부 일 : 2025. 12. 24.

나.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 복지 법제는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신장과 자립 지원에 있어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 왔음. 그러나 이러한 법 체계는 권리의 주체를 장애인 당사자로 한정하는 개인 중심적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공동체인 ‘가족’을 체계적인 지원의 대상에서 소외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장애인,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78% 이상을 가족, 그중에서도 부모가 전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임. 24시간 이어지는 돌봄의 과정에서 가족들은 경력 단절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건강 악화,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깊은 고립감,

그리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정신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부모 사후 자녀의 삶’에 대한 불안감은 장애인 가족의 삶 전체를 짓누르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다차원적 위기는 결국 가정 해체, 돌봄 포기, 심지어 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불운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지원 시스템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임.

현행법에 산재한 단편적인 가족 지원 규정들은 이러한 총체적 위기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함. 서비스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파편화되어 있으며, 정보 접근성이 낮아 정작 필요한 위기 가정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국가 정책의 대전환 속에서 가족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본 법안은 장애인 가족을 단순한 ‘보호자’나 ‘돌봄의 도구’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자 함. 본 법안은 장애인 가족에게 정보, 교육, 상담, 휴식 지원 등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부모 사후를 대비한 공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함. 이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 제3조)

이 법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감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천명함.

(2) 정의(안 제2조)

‘장애인 가족’을 장애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및 그 외 실질적인 보호와 부양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정의함.

‘주 돌봄 제공자’를 장애인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지원의 핵심 대상으로 명시함.

(3) 장애인 가족의 권리 및 국가 등의 책무(안 제4조, 제5조)

장애인 가족이 정보, 교육, 상담, 휴식 지원 등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함.

(4) 장애인 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

(5)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및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센터는 정보제공,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권익옹호, 자조모임 지원 등 장애인 가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6)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안 제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진단 초기,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가족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7)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안 제14조)

장애 진단 초기의 충격 완화를 위한 위기상담,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및 우울감 해소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을 의무화함.

동일한 경험을 가진 가족 간의 교류와 지지를 위한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함.

(8) 휴식 지원(안 제15조)

주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 단기보호시설 입소,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휴식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함.

(9) 돌봄 역량 강화 및 정보 제공(안 제16조)

장애 유형별 특성 이해, 긍정적 행동 지원, 의사소통 기술 등 주 돌봄 제공자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장애 진단 시점부터 관련 복지, 의료, 교육, 법률 정보를 담은 ‘장애인 가족 지원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10) 주 돌봄 제공자의 건강권 보장(안 제1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1) 경제적 지원(안 제18조)

장애 자녀 돌봄으로 인해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중산층 가구의 주 돌봄 제공자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2) 공공후견 및 신탁 지원(안 제20조)

부모 사후를 대비하여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제도의 개발 및 이용을 지원함.

(13) 미래 설계 상담 및 계획 수립 지원(안 제21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주거, 재산, 법률, 사후 돌봄 계획 등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과 미래 생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계획 수립을 지원함.

II.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 제정안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과 주 돌봄 제공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지원센터 설치 등 추진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휴식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총 5개의 장과 24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4조(장애인 가족의 권리)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장애인 가족 실태조사)
제8조(장애인 가족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제10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3장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제11조(지원 신청)	
제12조(개인별 가족지원계획의 수립)	
제13조(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14조(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제15조(휴식 지원)	
제16조(돌봄 역량 강화 및 정보 제공)	
제17조(주 돌봄 제공자의 건강권 보장)	
제18조(경제적 지원)	
제4장 미래 설계 지원	
제19조(미래 설계 지원의 기본원칙)	
제20조(공공후견 및 신탁 지원)	
제21조(미래 설계 상담 및 계획 수립 지원)	
제5장 보칙	
제22조(비용의 부담)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장애인 가족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및 장애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면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셋째, 국가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넷째,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 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휴식 지원, 주 돌봄자에 대한 의료비 및 돌봄 수당 등을 제공하거나, 할 수 있음.
- 여섯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미래 설계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고, 개인별 미래 설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2. 입법 배경 및 검토 의견

- 우리나라의 장애인 추정 수는 약 263만 명이고,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2.28명임을 고려하면, 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동거 가족원 수는 평균 1.28명 수준으로, 장애인 가족의 규모는 약 300만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정됨.¹⁾

이러한 장애인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소수 집단이라 보기 어려운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한 부양 관계를 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실제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주로 지원하는 사람의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37.8%), 부모(21.2%), 자녀(18.5%) 등 직계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77.5%로 나타나, 장애인 돌봄의 상당 부분이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생애주기에 따라 가족에게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상으로 나타남.²⁾

- 장애아동 돌봄과 관련하여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자녀의 직업 및 취업 문제’ 12.1%, ‘비장애 형제에 대한 염려와 미안함’ 9.7%, ‘미래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 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8만 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

1)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적 추정치로서, 정확한 가족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소득(2022년 4/4분기 기준 483.4만 원)의 63.3% 수준에 그치고 있음.³⁾

□ 장애인 가족이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무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러한 관점은 국제사회 규범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우리 국회가 2008년 12월 비준하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는 가족을 장애인의 권리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보호·지원 주체로 규정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보 제공,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 재정지원을 포함한 국가의 보호·지원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UN장애인권리협약 전문」

이 협약 당사국은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UN장애인권리협약」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을 약속한다.

5. 당사국은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확대가족 내에서 대체 보살핌을 제공하고,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절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일시적인 보살핌을 포함하여 장애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이 같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육·교육·정보제공 등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과 예산 또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⁴⁾

□ 참고로, 해외 주요국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독립적 법률을 두기보다는, 장애인(장애아동) 당사자에 대한 지원 법제 또는 가족 돌봄자·사회서비스 관련 법제 내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을 함께 규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영국은 장애아동 지원 및 돌봄 가족 지원 제도 내에서 여가·주간보호·주거개선, 단기 휴식 및 정보 제공 등 장애인 가족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독일은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급여와 일반 가족지원 서비스 체계 내에서 임시·단기·완화 돌봄, 가사·동반자 지원 등 장애인 가족 지원을 규율하고 있음.

4) Kim, K., Kang, K., & Lee, M. (2016). Current status of use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support services for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5(4), 205-229.

- 스웨덴은 장애인 지원 법제(LSS)와 사회서비스법(SoL)을 통해 동반자 지원, 단기 체류, 재가 휴식 및 대체 서비스 등 가족 돌봄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장애인 가족 대상 지원 서비스>

구분	장애인 가족 지원 내용
영국	<가족을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 장애아동의 여가 서비스 접근성 지원 • 지역 기반 주간보호센터 • 집 개조 비용 지원 <돌봄 가족 지원 서비스> • 단기 휴식 서비스 • 정보 제공 서비스
독일	<가족을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 돌봄급여 중 • 부분생활시설의 주간·야간 돌봄 • 부재 돌봄(임시 돌봄, 최대 6주) • 단기 돌봄(생활돌봄기관 이용) • 완화 돌봄(돌봄보조금) • 가정 내 돌봄에서 돌봄 보조수단(돌봄 도구 구입비 지원) <돌봄 가족 지원 서비스> - 일반 가족 지원 서비스 중 • 가사 지원 • 동반자 지원 • 부모를 위한 의료적 재활 • 가족 지향 재활 서비스
스웨덴	<가족을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1)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LSS) • 동반자 지원 서비스 • 장애아동 단기 체류 서비스(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생활할 기회 제공) (2) 사회서비스법(SoL) • 기타 특정 24 시간 개호를 위한 자택 ‘단기 주거’ <돌봄 가족 지원 서비스> (1)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LSS) • 재가 기반 휴식 서비스

구분	장애인 가족 지원 내용
	- 정서적 지원을 위한 연락(정보 제공 등) 서비스 (2) 사회서비스법(SoL) - 홈케어 서비스(동행 지원, 대체 서비스)

자료: 이민경. (2022).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국외 사례 고찰과 함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2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정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돌봄에 있어 가족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상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지원 대상과 내용, 전달체계 및 예산 구조가 충분히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장애인 가족과 주 돌봄 제공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담 지원센터 설치 등 정책 추진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휴식 지원, 돌봄 역량 강화, 경제적 지원 및 미래 설계 지원 등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이 단편적인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대상과 내용, 전달체계 및 재정 지원이 연계된 종합적인 정책 체계로 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① 장애인 가족 지원을 제정안과 같이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 ② 기존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근거 개별 법률을 보완·강화하는 방안 등

어떠한 방식이 법률 체계 정합성과 정책 대상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정된 재정 여건 아래 실질적인 가족 돌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 달성에 보다 적합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의 개별 조문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제정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가족’을 혼인·혈연 중심의 형식적 가족 개념을 넘어 실질적인 돌봄·부양 관계까지 포괄하도록 정의하고, ‘주 돌봄 제공자’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보호·부양’의 의미와 범위, ‘주 돌봄 제공자’의 선정 기준 및 지정 방식 등이 법률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행정 집행 과정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 판단 기준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 둘째, 제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가 현행 장애실태조사와 조사 대상 및 내용 측면에서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정안이 개별 장애인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연

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도지사로만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셋째, 제정안 제10조는 중앙 및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중앙과 지역 센터의 수행 업무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위탁의 주체·범위 등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넷째, 제정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원 신청, 개인별 가족지원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지원, 상담·휴식·교육, 건강권 및 경제적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미 유사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다양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정안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 전반을 포괄하는 별도의 지원체계와 전달 구조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기존 제도와의 관계에서 기능 중복이나 사업 간 경계의 불명확성, 지원 대상 및 내용의 혼선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섯째, 제정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미래 설계 지원, 공공후견 및 신탁 지원, 미래 설계 상담·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래 설계 계획은 제정안 제12조의 개인별 가족지원계획과 수행 주체 및 내용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양 계획의 목적·범위 및 상호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통합·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 다만, 가족지원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현행 법체계, 법 시행 시 수반되는 예산(돌봄수당 등)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지체장애인협회

- ☐ 장애인가족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고 가족형태를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한 것은 긍정적임.
- ☐ 다만, 제정안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돌봄을 수당의 형태로 가족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음.

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 제정 필요성에 찬성하며 고위험 장애인 가족을 조기에 발굴·지원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정신장애인, 중도장애인, 뇌병변·지체장애아동 장애인을 위한 가족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인 가족의 역량강화 및 돌봄 제공자의 건강관리 지원도 필요함.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 가.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장애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면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사람
3. “주 돌봄 제공자”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주된 책임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정안 제2조제2호**에서는 ‘장애인 가족’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면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혼인·혈연 중심의 형식적 가족 개념을 넘어, 실질적인 돌봄·부양 관계를 기준으로 정책 대상 범위를 넓게 설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 특히, 비혈연 동거인, 장기 돌봄 제공자 등 현행 「민법」상 가족⁵⁾에 포함되지 않는 실질 보호자까지 포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다만, ‘사실상 보호·부양’의 의미와 판단 기준이 조문에 제시되어

5)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있지 않아, 보호·부양의 범위, 일시적 동거자의 포함 여부, 경제적 부양 요건 등을 둘러싸고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향후 지원 대상자 선정이나 실제 집행과 연계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판단 기준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또한, 제정안 제2조제3호의 ‘주 돌봄 제공자’ 역시 ‘돌봄을 주된 책임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 기준 및 주체, 지정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 대상 설정이 불분명해질 소지가 있음.

- 주 돌봄 제공자는 제정안에 따라 휴식 지원(제정안 제15조),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제정안 제17조), 경제적 지원(제정안 제18조) 등의 지원을 받게 됨.

따라서 ‘사실상 보호·부양’의 의미와 ‘주 돌봄 제공자’의 선정 기준 및 주체, 지정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7조(장애인 가족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 가족의 생활 실태, 복지 욕구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 가족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담, 휴식, 교육 등 주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제9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 **제정안** 제7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장애인 가족의 생활 실태, 복지 욕구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가족 지원과 관련된 정책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장애인 가족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1조6)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도 일정
 부분 파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경우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장애실태조사가 장애인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총괄하는 조
 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실무적 연계를 강화하면서 제정안에 따른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 입법례를 참
 고하여

이를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
 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
 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립 지원 실태조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
 립 지원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6)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8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 규정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은 신청 접수, 개별 지원계획 수립, 상담·휴식 지원 등 대부분이 개별 가구를 직접 상대하는 현장 중심 업무로,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지역 여건과 대상자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도지사로 한정하는 것이 정책 집행의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 그 대상이 장애인 당사자의 생애주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장애인 가족의 생애주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 제정안 제13조⁷⁾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생애주기의 적용 대상을 장애인 가족으로 명확히 하거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 간 개념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7)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3조(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진단 초기,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장애인 가족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제10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u>국가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각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u>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내</u> <u>2. 장애인 가족의 욕구 사정 및 사례관리</u> <u>3. 상담, 교육, 휴식 지원 등 서비스의 직접 제공 또는 연계</u> <u>4. 장애인 가족의 권익옹호 활동</u> <u>5.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의 구성 및 운영 지원</u> <u>6.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u> ③ <u>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제정안** 제10조에서는 국가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 또는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휴식 지원 등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면서도, 그 수행 업무는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중앙과 지역 센터 간 기능적 차별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음.

또한,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탁의 주체와 범위, 이에 수

반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센터 운영 방식 전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앙과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간 역할과 기능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행 업무를 구분하고, 위탁의 주체·범위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
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제11조(지원 신청)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 또는 그 친족,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개인별 가족지원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센터와 협력하여 해당 가족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진단 초기,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장애인 가족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이 돌봄 과정에서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간의 정보 교류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휴식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질병, 경조사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긴급돌봄 서비스
2.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을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 운영
3. 주 돌봄 제공자의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
4. 그 밖에 휴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② 휴식 지원 서비스의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돌봄 역량 강화 및 정보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 돌봄 제공자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별 특성, 의사소통 기술, 위기상황 대처 방법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진단을 받은 장애인의 가족에게 관련 복지, 의료, 교육, 법률 등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안내서를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주 돌봄 제공자의 건강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경제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돌봄으로 인하여 취업이

곤란하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주 돌봄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비급여 항목 등 본인부담이 과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정안 제11조부터 제18조**에서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 신청 절차, 개인별 가족지원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휴식 지원, 돌봄 역량 강화 및 정보 제공, 주 돌봄 제공자의 건강권 보장, 경제적 지원 등 장애인 가족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돌봄을 그 가족의 사적 부담에만 맡겨 왔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가족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지원을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편입하고, 주 돌봄 제공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률에는 이미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휴식 지원, 상담·교육, 돌봄 지원, 소득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을 논의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부모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긴급돌봄,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단기보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등이 각각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 또는 장애인 돌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장애인 가족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법적 근거	2026년 국비 예산 (국비: 지방비)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직접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적(7일)으로 24시간 돌봄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8,334/ 보조율 50~70%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관련 분야 종사자 등	•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902/ 보조율 50%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 개별/집단 상담 제공 • 월 16만원 바우처 제공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1,286/ 보조율 50~7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 휴식지원 참여시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3,216/ 보조율 50~70%
장애인 돌봄 및 지원을 통한 가족 부담 완화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만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 지적·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 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172,236/ 50~7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	• 연 1,200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및 부모 휴식지원 프로그램 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	75,422/ 보조율 30~70%
장애인 의료비	• 의료급여 2종 및	•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애인	57,357/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법적 근거	2026년 국비 예산 (국비: 지방비)
지원 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등록 장애인	지원 - 1차 외래 750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조율 50~8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	•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후견 심판청구를 위한 행정절차 전 과정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3,541/ 보조율 50~80%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주간에 지역사회내에서 참여형, 창의형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288,671/ 보조율 50~70%
청소년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 6세이상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 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68,502/ 보조율 50~70%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중,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및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어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낮활동, 야간돌봄 등 1:1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92,058/ 보조율 40~70%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사업	• 성인 발달장애인	•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위탁재산의 적절한 사용을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1,122/ 보조율 100%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법적 근거	2026년 국비 예산 (국비: 지방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수급자격(42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활동보조(신체·가사 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816,409 / 보조율 50~70%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 기초급여(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 월 최대 349,700원 •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포함 시 * 소득수준에 따라 월 3~439,700원	「장애인연금 법」 제4조	907,129/ 50~70%
장애수당(기초)	•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3만원)	「장애인복지 법」 제49조	156,733/ 50~70%
장애수당(차상위)	•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 월 6만원	「장애인복지 법」 제49조	52,843/ (50~70%)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아동 대상 소득수준에 따라 월 9~22만원 지급 • 경증장애아동 대상 소득수준에 따라 3~11만원 지급	「장애인복지 법」 제50조	20,438/ 50~70%
장애인주간이용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낮시간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	「장애인복지 법」 제58조	지방이양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안이 장애인 가족 지원 전반을 포괄하는 별도의 지원체계와 전달 구조를 새롭게 구축할 경우, 기존 법률에

근거한 지원 사업과의 기능 중복, 사업 간 경계 불명확, 지원 대상 및 내용의 혼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이미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지원 사업을 다시 포괄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입법적 필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제정안 제11조(지원 신청)는 신청권자를 ‘장애인 가족 구성원’, ‘친족’, ‘관계인’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집행 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제정안 제2조제2호에서는 장애인 가족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장애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면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권자에 다시 ‘친족’을 포함하고 있음.

- 「민법」 제767조⁸⁾에 따르면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또한 ‘관계인’의 경우도 그 범위와 성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관한 해석상 혼란이나 자의적인 적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신청권자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⁹⁾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아울러, 제정안 제18조(경제적 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비급여 항목 등 ‘본인부담이 과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비용’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 범위 및 금액 등에 대한 해석상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과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 정도, 치료의 지속성 등 기본적인 판단 요소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미래 설계 지원

제19조(미래 설계 지원의 기본원칙) 장애인 가족에 대한 미래 설계 지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20조(공공후견 및 신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 돌봄 제공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후견제도⁹⁾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신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미래 설계 상담 및 계획 수립 지원) ① 센터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 재산, 법률, 사후 돌봄 계획 등 미래 설계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한 개인별 미래 설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정안 제19조부터 제21조에서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미래 설계 지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공공후견 및 신탁 제도 활용, 미래 설계 상담 및 계획 수립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성년후견제’로 규정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는 장애인 돌봄이 현재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삶의 설계와 사후 돌봄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불안과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 제21조(미래 설계 상담 및 계획 수립 지원)는 제정안 제12조에 따른 개인별 가족지원계획 수립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제정안 제12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장애인 가족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가족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정안 제21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 재산, 법률, 사후 돌봄 등을 포함한 미래 설계 상담을 제공하고, 개인별 미래 설계 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가족 지원 법안」	
제 12조(개인별 가족지원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u>센터와 협력하여 해당 가족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u>	제21조(미래 설계 상담 및 계획 수립 지원) ① 센터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 재산, 법률, 사후 돌봄 계획 등 미래 설계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한 <u>개인별 미래 설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u> 하여야 한다.

□ 특히, 두 계획은 대상과 수행 주체가 각각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로 동일하므로, 각 계획 간 목적과 범위, 상호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내용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인별 가족지원계획과 개인별 미래 설계 계획을 각각 별도의 계획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계획 체계로 연계·통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보칙

제22조(비용의 부담)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정안 제22조부터 제24조**는 제정안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 장애인 가족 지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행정 여건에 따라 관련 권한을 탄력적으로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제정안 제23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벌칙을 함께 규정하는 입법례가 존재하는바,

비밀유지 의무의 실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제정안에서도 벌칙 규

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7조를 위반한 자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은 이 법에 따른 센터로 지정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전제로 지원 신청 절차와 개인별 가족지원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휴식 지원, 돌봄 역량 강화 및 정보 제공, 주 돌봄 제공자의 건강권 보장, 경제적 지원, 미래 설계 상담 및 계획 수립 지원 등 다양한 개별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 마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하위 법령 제정, 현장 안내 및 준비,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등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공포 후 1년이라는 시행 준비 기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제정안 부칙 제2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을 이 법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센터 설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 시행과 동시에 새로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기보다는, 기존에 운영 중인 기관을 활용하여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계적인 센터 설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임.

- 참고로, 현재 1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2항¹⁰⁾ 및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¹¹⁾에 근거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자체 예산 등에 의해 운영하고 있음(참고자료 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 참고자료 2: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다만, 이 경우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제도에 대해서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즉, 부칙의 경과조치를 통해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체계로의 일원화를 예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

10)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 2026년 1월 기준,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97개 등 총 1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 중임.

대해 법률상 근거가 이중으로 병존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가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장애인 가족 지원 법안」 제10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각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 장애인 가족의 욕구 사정 및 사례관리 3. 상담, 교육, 휴식 지원 등 서비스의 직접 제공 또는 연계 4. 장애인 가족의 권익옹호 활동 5.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의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은 이 법에 따른 센터로 지정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

2026.1. 기준

시도	개 소 수	지 자체 지 원 (백 만 원)	지 자체 지 원 이 외 예 산* (백 만 원)
계	125	28,598	3,428
서울	26	6,499	869
부산	1	252	42
대구	1	285	75
인천	2	406	5
광주	1	267	10
대전	2	537	23
울산	1	126	-
세종	1	354	86
경기	24	7,283	1,539
강원	4	575	214
충북	8	2,203	110
충남	11	2,713	223
전북	3	658	7
전남	4	913	81
경북	13	2,318	104
경남	21	2,772	40
제주	2	437	-

주1): 지자체 지원 이외 예산은 후원금, 사업수입 등을 포함한 예산임.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총 113개(광역시 16, 시군구 97)

2026.1. 기준

구분	조례 제명	
	광역시	시군구
서울특별시 (21)	광역시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3)	광역시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기초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1)	광역시	-
	기초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1)	광역시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기초	-
광주광역시 (2)	광역시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기초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1)	광역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기초	-
세종특별자치시 (1)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기초	-

울산광역시 (1)	광역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기초	-
경기도 (25)	광역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기초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동두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7)	광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기초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홍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충청북도 (12)	광역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기초	괴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영동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충청남도 (12)	광역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기초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7)	광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기초	남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완주군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실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진안군 장애인 및 가족 등 지원 조례
전라남도 (5)	광역	전라남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기초	나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목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무안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경상북도 (5)	광역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기초	김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상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안동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경상남도 (8)	광역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기초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통영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함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합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 주 특 별 자 치 도 (1)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기초	-

자료: 보건복지부